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2. 7. 13.
행정 위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7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7월 2일 회부
- 다. 상 정 일 자 : 제89회(임사회) 제1차 위원회(2002.7.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(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), 동 규정 제17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개정에 따라
 - 행정기관의 「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 -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
 -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)
 - 휴직자의 연가일수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「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

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

$$\cdot 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\quad}{12\text{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동 개정조례(안)은 첫째,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토요일을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방침에 따라 「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적절하며, 둘째로 휴직사유에 의해 휴직한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경우 현행 규정은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여 실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복직한 공무원이 근무 월수에 비례하여 본인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호	2
-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2. 7. 2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 이유

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(토요일전일근무제 및 휴무제), 동규정 제17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개정에 따라

- 행정기관의 「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」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
- 휴직 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개정

-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의2)
- 휴직자의 연가일수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1조)

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

$$\cdot \text{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\text{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}}{\text{12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3. 참고사항관련근거

- 가. 관련근거 :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, 제17조 및 서울시 인사 12135-1082(2002.3.30)호 (“주 5일 근무제” 시범실시 관련 시행지침 시달계획)
- 나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개정(안) : 별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“(토요일전일근무제)”를 “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”로 하고, 동조 제1항중 “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”을 “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항중 “토요일전일근무제”를 “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”로 한다.

제2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,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결근일수·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
-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

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

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

$$\circ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\text{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}}{\text{12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 연가일수}$$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6조의2(토요일근무제)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토요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제16조의2(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,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</p> <p>②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</p>
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결근일수·휴직일수·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결근일수·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.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.5일 미만은 절사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</p> $\circ \text{ 휴직자의 연가일수} = \frac{\text{12월-당해연도 휴직기간(월)}}{\text{12월}} \times \text{당해연도연가일수}$
<p>②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·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.</p> <p>③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</p>	<p>③</p> <p>④</p>